삼정 KPMG

#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93 | March 2022

삼정KPMG 세무본부 TKC

# Contents

Page


## Tax Note 3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분야 주요 공약 및 시사점

## 소득법인세 분야 12

- [심판례]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심판례] 홍콩법인 A의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성실신고확인서를 수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예규] 특허권 공동소유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예규]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 재산소비세 분야 16

- [판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한 거래 전부를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된 사업장에서 한 거래(내국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납세자승)
- [판례]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 (일부납세자승)
- [심판례]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쟁점공장건물을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소)
- [심판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사] 이 사건 상속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용)
- [예규]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의 과세대상 여부
- [예규]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경락 시 회수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예규] 장애인용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예규]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여부
- [예규]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예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Page


## 지방세 분야 25

- [심판례] 신탁수수료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관세 분야 27

- [심판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취소)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Tax Note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조세분야 주요 공약 및 시사점

### Ⅰ 부동산 세제

#### 1. 주요 공약

##### (1) 개편 방향

-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 (TF 구성)
  - 부동산세제를 부동산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

##### (2) 보유세

-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 폭 조정
-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 상호검증)
  -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완화
  -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 150% → 50%, (조정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00%로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보유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 (3) 거래세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완화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Ⅰ 부동산 세제, 계속

### (4) 주택임대차 관련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m2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세제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 계층혼합(social mix)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손실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세액공제를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약계층에 배정된 임대주택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발생하는 손실액

-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

  –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를 주거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대신(임대료는 시장가격의 2/3 이하) 사업자에게 각종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자가거주 가구가 주택 다운사이징 후 차액을 개인퇴직연금(IRP) 등에 불입할 경우, 연금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경감

  – 주택 다운사이징 후 개인퇴직연금 등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2. 시사점

- 지난 정부의 시장규제적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이 정권 교체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세율 등의 조정을 통한 보유세 및 거래세 완화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므로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고려할 때 즉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2020년 수준)에 관한 정책은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 개정사항에 해당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임.
-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임.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 거래·보유에 따른 세부담의 완화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II 소득세

### 1. 주요 공약

#### (1) 코인 투자 과세제도

-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 선 정비·후 과세 원칙

  ※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점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되어 있는 상황임.

#### (2) 주식거래세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으로 유지

#### (3)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대상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인
  - 소득공제율 확대 : 40% → 50%
  - 공제액 한도 : 300만 원 → 400만 원(주택청약저축 공제액 포함)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대상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세액공제율 2배 상향 : 7,000만 원 이하(10% → 20%) / 5,500만 원 이하(12% → 24%)
  - 연 월세액 한도 : 750만 원 → 850만 원

#### (4)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 상향

| 구분 | 현재 | | 근로장려금 확대 공약 | |
|---|---|---|---|---|
|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총소득 기준금액 (20% 상향) | 최대지급액 (10%, 20% 상향) |
| 단독 가구 | 2,000만 원 | 150만 원 | 2,400만 원 | 165만 원 (10% 상향) |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260만 원 | 3,600만 원 | 312만 원 (20% 상향) |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00만 원 | 4,320만 원 | 330만 원 (10% 상향) |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II 소득세, 계속

### (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임대료 나눔제(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의 1/3씩 나누어 분담) 프로젝트 추진
  -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
-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세제지원 확대
  -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 한시적 50%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한시적 전액 세액 공제
  -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 (6) 우수 인재 육성

-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으로 유입되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 (2억 원)
- 코스닥 상장기업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하여 벤처기업의 상장 유인
  - 비과세, 행사이익 세금분할 납부, 양도시점 과세 이연 등 특례 적용을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

### (7) 기타

-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 경감
  -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제
-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 (1,000만 원 이하) 15% → 20%
  - (1,000만 원 초과) 30% → 35%

## 2. 시사점

- 코로나 사태 등으로 위축된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자영업자, 저소득자, 노인 등에 대한 세제 차원의 복지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 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 가상자산의 시장안정화와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가 다시 연기될 가능성 있음.
- 주식양도소득세의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i) 소액주주양도소득세의 경우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도의 시행 이전 법개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고, (ii) 대주주양도소득세의 폐지는 법률 개정사항인데, 부자감세, 채권, 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과의 형평성 저해와 같은 논란 등으로 여소야대 국회 지형 하에서 해당 공약의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Ⅲ 법인세

### 1. 주요 공약

#### (1) 신산업 등 육성

-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R&D 및 세제지원 확대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 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 클라우딩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법인세 공제 등 '클라우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2) R&D 지원

- 과감한 조세 등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 2배 증가 유도
  - 조세지원, 금융지원의 확대 시행과 출연지원의 민간 매칭 확대

#### (3)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 권역별 신산업 분야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조성
  - 입주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 및 유턴기업에 파격적 감세 조치 등 혁신 시스템 도입 운영
  - 비수도권 클러스터 참여 국내외 선도기업에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세지원

#### (4) 중소·중견·벤처기업 등 지원 및 육성

- (중소·벤처기업) ESG 역량 강화 및 적용 확대를 위해 ESG 지표를 활용한 세제지원
- (중소·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투자세제 지원 확대
  - 공장자동화, E-커머스 위한 물류설비 자동화,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 비대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 이동근무, 화상 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필수 기기 구입 시 세제지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사양 산업 및 개별기업의 구조조정 대비 세제 등 포괄적인 산업구조 전환 지원 관련 제도 마련

#### (5) 국내 복귀기업 지원

- 사업장 신·증설 기간을 감안해 유턴기업 세액감면 요건 완화
  - 국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내 → 3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하는 경우
- 파격적 감세 조치 등 혁신 시스템 도입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Ⅲ 법인세, 계속

### (6)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

## 2. 시사점

- 문재인 정부의 법인 과세 강화 조세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경영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인하 및 세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R&D 및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정책은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권역별 클러스터 참여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 및 중소·중견·벤처기업 등 지원·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은 조세법령 외에도 연관 법령 등의 정비도 연계되어 있어 해당 정책 추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한편,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30여 개에 이르고 그 범위 또한 각 법령 취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바, 조세법령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떤 형태로 조정할지 가늠하기 어려움.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Ⅳ 상속세 및 증여세

### 1. 주요 공약

#### (1) 개선 배경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중소기업 승계 수요의 급격한 증가 예상
  - 사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수, 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의 단순 이전이 아닌 종합적 경영 능력 이전 과정
- 가업승계 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세부담, 관련 정책 부족 등 원활한 가업승계가 어려워 우량 장수기업의 폐업과 매각 위험

#### (2) 가업승계 제도 개선

-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사후관리 의무기간, 사후요건 등을 완화
  -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및 사후관리 기한 현행(7년)보다 단축
- 중소기업의 계획적 승계 지원을 위한 사전증여제도 개선

### 2. 시사점

- 가업승계 사후관리 기한과 관련하여 단축기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선진국 기준을 따른다는 공언에 비추어, 일본과 같이 '5년 이하' 수준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가업승계 제도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변화되는 세제 환경에 적합한 Tax Planning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경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Ⅴ 기타

### 1. 주요 공약

#### (1) 탄소중립 추진

- 탄소세 도입은 신중하게 추진
- 탈산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국가 전략기술로 수소생산 관련 기술 조정
  -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노후 산단 및 중소기업 밀집 단지의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전환 지원

#### (2) 행정심판 개편

- 통합 행정심판원 창설
  -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기관들(조세심판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을 통합,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 권리구제 실현
- 국민이 신뢰하는 행정심판을 위해 기구 독립성, 위원 전문성, 절차 투명성 강화
  - 법관에 준하는 위원의 신분 보장과 심판의 독립성 보장
  - 조세, 회계, 의료 등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위원자격 개방으로, 행정청 일변도를 탈피한 심판의 전문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강화
  -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심판절차 참여권 보장, 심판 과정의 공개 확대 추진
- 국민편의적인 조정 활성화를 통한 국민고충처리의 실질화
  - 행정심판 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방안의 실질적 확대
  - 국민고충처리의 법적 근거 확립

#### (3) 자본시장 선진화

- 회사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 보호대책 제도화
  -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가능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
  - 주식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 재검토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Ⅴ 기타, 계속

### 2. 시사점

- 탄소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i) 별도의 세목을 신설할지 기존 에너지세의 세율을 조정할지, 그리고 (ii) 탄소세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병행한다면, 기업들에게 이중으로 부담이 지워질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양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한편,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정책은 다양한 조세 지원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조세심판원은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 것인데, 10여년 만에 통합 행정심판원이 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됨. 행정심판원이 창설되어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가 신분이 보장된 심판위원(심판관)으로 위촉된다면,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물적)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대책이 기업 구조조정 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소득법인세 분야

## [심판례] 청구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소속이 아닌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21전4645, 2022. 2. 8.

**[사안]**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연구소 소속이 아닌 품질팀, 보증팀, 기술팀("쟁점부서")에 소속된 신차개발 전담인원의 인건비("쟁점인건비")와 시제품 외주시험비 등을 포함한 시제품 제작원가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함.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와 시제품 외주시험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로 보아 해당 법인세를 감액경정함. 이에 청구법인은 위 쟁점인건비와 시제품 외주시험비와 관련하여 세액공제되지 아니한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1차)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쟁점인건비와 시제품 외주시험비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2)에서 규정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할 견본품의 구입비용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시제품 외주시험비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쟁점인건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관련 회계처리 내역 미제출로 인해 시제품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 대응된 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해당 법인세를 감액경정함. 이에 다시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세액공제되지 아니한 법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2차)를 제기함.

**[판단]** 시제품의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 뿐만 아니라 노무비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신차개발 전담인원이 수행한 시제품 검사·시험 업무는 일련의 시제품 제작과정 중 일부에 해당하고 시제품 제작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 쟁점인건비는 시제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인건비의 회계처리 내역(노무비 계정의 제조원가 대체 등) 및 2014사업연도 시제품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인건비가 시제품 제조원가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시제품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쟁점인건비를 포함한 시제품 제작 관련 인건비를 모두 판매관리비 계정에 비용(급여)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에 지출한 금액은 비용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와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모두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연구개발에 지출한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연구개발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자료가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인건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심판례] 홍콩법인 A의 주식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유보액을 차감하여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조심 2020서8642, 2022. 2. 21.

**[사안]** A사는 청구법인의 해외사업을 위하여 홍콩에 설립된 현지법인이며 甲은 청구법인 및 홍콩현지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1차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홍콩현지법인에 관한 실질적 관리를 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홍콩현지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홍콩현지법인의 손익을 청구법인의 국외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한 금액 중 甲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상여로, 그 외는 청구법인의 해외자산으로 보아 유보로 소득처분("쟁점유보액")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甲은 2016. 5. 4.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A사 주식("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2차세무조사)하여 A사가 쟁점유보액을 청구법인에 반환하지 않아 A사의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다고 보아 쟁점주식 평가 시 쟁점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A사를 휴·폐업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치를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甲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손금산입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甲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판단]** 처분청의 1차세무조사 과세처분자료를 보면, 해외현지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서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수행하여 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국외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였고 해외소재 현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자산으로 보아 유보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1차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청구법인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甲에게 유출된 금액 외에 쟁점유보액만큼은 청구법인의 관리범위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유보액이 청구법인의 사내에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인 A의 장부에 기재된 현금액 상당액은 A의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후 1차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위 부과처분은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청구법인이라거나 해외현지법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한 점, 청구법인은 1차세무조사 결과 쟁점유보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는데, 이후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동일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하여 사실상의 법인세 부담액은 없었고(기간귀속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 등의 효과 제외), 이 건 주식의 고가취득으로 인해 비로소 소득처분 및 법인세 부담액이 발생하게 되는바, 당초 소득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보는 것은 세 부담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심판례] 성실신고확인서를 수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조심 2021소5750, 2022. 1. 11.

**[사안]** 청구인은 안과를 운영하는 의료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로, 당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자기조정으로 신고("당초신고")하였다가 2020. 11. 30.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정정하되, 관련 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및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함께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쟁점세액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며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21. 2. 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소득세법이 그 제출기한을 정한 법적의무사항으로, 쟁점세액공제는 그 의무가 준수되었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혜택(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제출기한을 정한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고, 그 밖에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한 점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 준수를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2항)을 단순한 절차요건으로 보아 사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려면 신청에 앞서 법령이 정한 다른 요건 등이 사전에 충족되어야 함은 당연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은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규정이라기보다는 감면신청을 위한 전제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음에도 감면신청을 누락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신청절차의 누락으로 볼 수 있겠으나, 성실신고확인서 자체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감면신청 누락이 아닌 감면요건 자체를 불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정신고 시 제출한 이상, 쟁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예규] 특허권 공동소유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 사전-2022-법규국조-0081, 2022. 2. 15.

내국법인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허권에 대해 외국법인(C)과 해당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와 B 간의 합의에 따라 해당 특허권 사용계약은 B가 단독으로 C와 체결하고, B가 C로부터 받는 특허권 사용대가 중 A에게 귀속될 금액("A 귀속분")은 수취 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A에게 지급 시 그 지급액과 미지급금을 상계하고, A법인은 "A 귀속분"을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A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TKC 코멘트]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해외에서 공동사업체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된 세금을 해외 과세당국에 공동사업체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각 공동사업자의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는 것임(서면2팀-1536, 2006. 8. 18.).

## [예규]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2. 2.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위 기재부 예규는 기존 국세청 예규를 뒤집은 것임. 즉, 기존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8항에 따른 A법인이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A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서면-2020-법령해석국조-2523, 2021. 8. 6.).
- 위 기재부 예규상 근거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제8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외의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계산 시 보수·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개정된 것임(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다만, 보수 중 성과보수는 제외되는바, 이는 해당 성과보수의 성격을 동업기업 소득의 분배로 보기 때문임.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재산소비세 분야

## [판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한 거래 전부를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된 사업장에서 한 거래(내국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님 (납세자승)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1331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국제석유거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DDD는 내국법인인 EEE가 벙커링 사업부를 분사시키기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자회사로서, 2012. 9. 17. EEE와 동일한 사업장("DDD 서울영업소")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음.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인 CCC는 2012. 12.경 세관장에 일시양륙 신고를 하고 일본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국제운송 중이던 선박유를 울산 온산항 내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는데, 원고는 2012. 12. 17. 위 선박유 중 일부를 매수한 후 그 다음 날인 2012. 12. 18. 이를 DDD에 매도함("이 사건 거래"). 처분청은 DDD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DDD를 내국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DDD에 법인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8. 7. 19.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국내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이 사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억원을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함.

**[판단]** 피고는 'DDD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수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실질적 관리장소'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관할권 범위를 정하기 위한 개념이고 부가가치세법은 위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한 거래 전부를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된 사업장에서 한 거래 또는 내국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거래에 있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것은 DDD 본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재화(선박유)를 공급받은 자는 DDD 서울영업소가 아닌 DDD 본점(싱가포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판례]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 (일부납세자승)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53337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2011. 3.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2. 5. 10.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 전체를 A요양병원에 임대하였음.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5.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B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6. 6. 13. C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되, C의료재단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7. C의료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원고는2016. 6. 2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중 이 사건 건물이 담보하는 부분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D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수익환원법)과 E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의 평균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6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규칙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토지) 및 원가법(건물)이 감정평가방법으로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D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C의료재단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순영업소득을 산출하고, 산출된 순영업소득에 자본환원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수익가격을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여 산출되었는데, 이러한 산출방식은 시장에서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되는 이른바 시장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익환원법이나 수익가치를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감정평가방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표준으로서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디까지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액이 토지와 건물의 적정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환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D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감정평가액과 E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함.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심판례]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쟁점공장건물을 국세청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면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조심 2021광4743, 2022. 2. 7.

**[사안]** 부부사이인 청구인들은 2017. 11. 13. 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주식(“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처분청은 ‘특정주식 등 양도세율 적용 적정 여부 신고내용 확인 계획’에 따라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A회사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이상이고, 청구인들의 주식보유 비율이 50% 이상이며, 양도한 쟁점주식의 비율이 전체 50% 이상이므로 쟁점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특정주식”)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일반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1. 7. 8. 청구인들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는 취지는 특정시점에 평가대상자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자산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최대한 시가에 가깝게 평가하기 위한 것인 바, 공평의 관점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 쟁점공장건물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도 그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시가에 가깝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달리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을 동일한 문구로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에만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은 특정주식의 양도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총자산 대비 부동산 비율을 계산할 때, 조정률을 적용하지 아니할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건물에 대하여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여 다시 평가한 후 쟁점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정하여 청구인들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심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취소)

### 조심 2021전1792, 2022. 2. 16.

**[사안]** A주식회사는 유동성 악화로 2012. 3. 13.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위 회생절차는 2018. 9. 3. 조기 종결됨), A주식회사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A주식회사의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2013. 1. 16.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6.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 5.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내지 2018년(2015년 제외)에 걸쳐 자신의 보유 부동산("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A주식회사의 채무를 상환하였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적용하여 2013년 내지 2018년(2015년 제외)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법인에 증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조특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0. 11. 13. 청구인에게 2016년 내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판단]** 조특법 제40조를 신설한 입법취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2009년 3월)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의 자산 무상증여를 지원하기 위해 주주의 자산 양도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 할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수년에 걸친 회생계획안의 경우에 처분청처럼 "하나의 계약"을 회생기간 전기간 중에 단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사실상 세제지원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혜택이 사실상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목이라는 특성을 종합해보면 조특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을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각 과세기간(매년) 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A주식회사의 회생계획안(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와 자산증여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매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매매허가를 받아 실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에 증여하여 이 외의 다른 과세특례요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조특법상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TKC 코멘트]**

- 종래 국세청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시기가 다른 3필지의 양도대금을 각 토지가 양도될 때마다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4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음(부동산거래관리과-487, 2011. 6. 20.).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심판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조심 2021서6634, 2022. 2. 8.

**[사안]** 청구인들은 2020. 5. 28. 조부 甲으로부터 건물 및 그 부수토지("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10("쟁점부동산지분")을 각 증여받은 후 이를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여 관련 증여세를 각 신고 · 납부함. 조사청은 A사 및 B사에 증여일(2020. 5. 28.) 기준 쟁점부동산지분 가액에 관한 평가를 의뢰하여 2021. 2. 22. 각 평가금액을 평균한 감정가액("쟁점감정가액")을 회신 받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2021. 3. 22.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지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2020 5. 28. 증여분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함.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일(2020. 5. 28.)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단서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이 시가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규정은 평가기간 이외의 기간 중에 특정한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가액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기획재정부 또한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한 감정평가액의 경우에도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 1. 27.), A사 및 B사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20. 1. 1. 자 공시지가를 시점 보정하여 2020. 5. 28. 기준 쟁점부동산지분의 토지감정가액을 산정한 이상 쟁점부동산지분에 관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20. 1. 1. 부터 2020. 5. 28.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빙 또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지분의 증여일(2020. 5. 28.) 기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심사] 이 사건 상속주택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용)

### 2021-심사-20, 2022. 2. 24.

**[사안]** 청구인은 일반주택을 단독 소유하면서 이 사건 상속주택 중 피상속인의 공유지분(1/2) 을 다른 상속인 2인(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음)과 상속받아 공동소유{이 사건 상속주택을 기준으로 한 청구인의 지분비율은 16.7%(=피상속인의 공유지분비율 1/2 x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 1/3}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2020. 11. 18.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 지분율은 6분의 1(16.7%)로 20% 이하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이의제기하자, 처분청은 2020. 11. 30. 이를 받아들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은 2020. 12. 2. 이를 납부하였음. 그 후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주택 지분의 20%'가 아닌 '상속지분의 20%'{상속지분인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1/2)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의 지분율은 33.3%(=1/3)로 위 20% 기준을 초과함}로 판단하라는 공지를 받자 2020. 12. 7. 당초 고지대로 증액경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16.7%로 20% 이하이며,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 제1호 가목의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라는 규정을 '상속주택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닌 '피상속인 지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입법과정에서 입법자의 의도가 상속지분 대비 비율이었다고 볼 근거도 따로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TKC 코멘트]**

- 2022. 2. 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 지분이나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2년간,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그 이후에는 공동 소유자 각자가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종부령 제4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예규]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의 과세대상 여부

### 사전-2021-법규재산-0799, 2022. 1. 25.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나(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같은 법 제87조의 2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의제배당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주식이나 출자에 한정되어(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의제배당 계산에 있어서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되지 아니함(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예규]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경락 시 회수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 사전-2021-법규재산-1384, 2022. 2. 21.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TKC 코멘트]

-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기존 예규는 삭제됨(부동산거래관리과-849, 2010. 6. 24. 등 다수).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예규] 장애인용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 3. 4.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TKC 코멘트]

- 위 기재부 예규는 보청기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기존 국세청 예규(서면-2021-부가-5702, 2021. 9. 30.)를 뒤집은 것임.

## [예규] 수입통관 후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제, 주세의 환급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여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 2022. 1. 25.

수입된 재화가 수입통관 이후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납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거나, 수입된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됨에 따라 주세법 제18조에 따라 주세가 환급되어 이미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감액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감액된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TKC 코멘트]

- 2022. 2.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착오, 경미한 과실(위 기재부 예규상 감액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구체화함(부가령 제72조 제4항 제6호 내지 제8호).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예규] 고객의 할인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 1. 25.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등을 부여 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마일리지등 외에 신용카드·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 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TKC 코멘트]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합 판결에서는,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한 경우, 2차 거래 시 대금에서 공제한 적립된 점수 상당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이를 2차 거래 시의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2차 거래를 한 사업자가 위 에누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차 거래에서 해당 점수를 적립해 준 사업자로부터 보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전분은 2차 거래 시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후 2017. 2.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7. 4. 1.이후 공급분부터 시행) 개정 시 마일리지 등(부가령 제61조 제1항)의 경우 제3자 보전분도 공급가액에 포함함(구부가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 현행 부가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 결국, 위 대법원 전합판결의 입장과 위 개정 시행령의 입장은 일견 상충된 것으로 볼 여지 있음.
- 한편,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누59750 판결(현재 대법원 계류 중임)에서는, 마일리지 등(부가령 제61조 제1항) 외의 할인방식(가령 청구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제3자 보전분 역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결국, 위 기재부 예규(부가가치세과-51)는 위 최근 하급심 판결(2020누59750 판결)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위 대법원 전합판결이나 위 개정 시행령과 아무런 모순이나 저촉이 없다고 할 것임.

## [예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면-2021-법규부가-6683, 2022. 1.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신탁업자("수탁자")가 2022. 1. 1. 전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며 수탁자 명의로 수취한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수탁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TKC 코멘트]

-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재화공급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구 부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의 매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2020. 12. 22.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2022. 1. 1. 이후 신탁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합리화를 위하여 동 조문을 삭제하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부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부가령 제5조의 2 제2항;).
- 위 유권해석(법규부가-6683)은 2020. 12. 22. 개정 전 법령 하에서 질의법인(수탁자)이 신탁재산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즉, 구법 하에서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임대용역 등)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음. 기존 기재부와 국세청 예규에서도 신탁재산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할 권한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음(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19. 7. 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587,2019. 11. 8. 등). 따라서, 상기 유권해석(법규부가-6683)은 기존 예규의 입장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임.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지방세 분야

## [심판례] 신탁수수료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심 2021지0919, 2022. 1. 19.

**[사안]** 청구법인(수탁자)은 2015. 3. 31. A사(위탁자)와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14.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2017. 4. 13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융수수료, 신탁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 9. 14.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함.

**[판단]** 계약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건 금융수수료 중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 개발사업관련 금융자문수수료로 기재된 합계액의 89.4734%에 해당하는 금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동 금액을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신탁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 기재 내용에 따라 누락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대법원은 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급한 신탁수수료는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수탁자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2937 판결).
- 하지만, 위 대법원의 입장이  세정운영 방식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2021. 12. 31.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가 다음과 같이 개정됨(시행일: 2022. 1. 1.).

| 개정 전 | 개정 후 |
|---|---|
|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 수수료 |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 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

- 위 재결(2021지0919)은 위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심판례] 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조심 2021지0785, 2022. 1. 27.

**[사안]** 청구법인은 2014. 9. 16. A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4. 2. 제3차 할부금 및 잔금을 납부한 후, 2019. 4. 2.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8. 3. 16. 및 2018. 9. 17. A에 지급한 제1차 및 제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건설자금이자("쟁점이자비용")을 포함하였고, 쟁점이자비용은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로서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처분청은 최종 연부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비용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제7조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부계약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물건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언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에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점, 연부취득은 부동산 등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상태는 아니지만 취득세 등을 조기에 과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등은 조기에 징수하면서도 연부금 지급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이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과세관청에게 이중으로 유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제도상 타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일까지 발생한 직·간접비용만을 포함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령 규정에도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TKC 코멘트]

- 위 재결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260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누32643 판결)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관세 분야

## [심판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취소)

조심2021관0101, 2022. 02. 08.

**[사안]** 청구법인은 2016. 8. 13. 부터 2018. 9. 17. 까지 특수관계자로부터 AAA 패널의 원재료인 BBB제품의 원재료(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함. 2016년 상반기부터 AAA 패널 시장의 단가 인하 압박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구법인도 고객사의 납품단가 인하 요청으로 2016년까지 주력 생산 제품이었던 BBB 제품의 원재료인 쟁점물품의 수입 단가 인하 없이는 생산 및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매가 계속될수록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단가 인하를 요청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이를 수용하여 수입단가를 인하하게 됨. 쟁점수출자는 2016년 6월경 청구법인에게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2016년 3분기) 적용되는 쟁점물품의 가격을 통지한 이후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해당물품의 원가에 가산하는 쟁점수출자의 이익률을 낮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하였다가 2018년 10월부터 종전 수준으로 거래가격을 인상함. 처분청은 2020. 7. 7. 부터 관세조사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조기 경정을 요청하여 2021. 4. 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음.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쟁점①)과 부가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쟁점②)에 대해 심판청구 제기함.

**[판단]** 청구법인은 2016년 상반기부터 AAA 패널의 저가공세가 거세어짐에 따라 AAA용 패널을 제조하는 고객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BBB 제품의 납품단가 인하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납품단가 인하로 BBB 제품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방식의 수입원재료 가격의 인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닌 제3자간의 거래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쟁점수출자가 제3자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쟁점수출자의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바, 2013년 기업심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통지되었고, 이 건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인하는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거래가격 인하 후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은 OOO%에 달하여 이렇게 인하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곧바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것으로 보는 이상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또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TKC 코멘트]

-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 개별건에 대해서 판단하므로 동일한 물품은 동일한 관세가치(Customs value)를 가짐.
- 본 사례에서는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가산세와 부가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해서만 쟁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평가 시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더라도 수입거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가격이라 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음. 관세평가 제1방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며 이는 실제 거래가격을 존중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임.
- 본 사례의 경우 국내시장의 경쟁업체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시장가격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거래가격의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제3자 거래 간에도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어 보임. 수입자는 사전에 ACVA를 통해 과세관청과 그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였다면 제1방법(실제거래가격방법)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삼정 KPMG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 KPMG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